

3.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 9 . 19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9월 4일 ·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9월 8일 원안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2003. 9. 19)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박 병 하)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청사는 8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어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구의 출연금(세입예산의 1% 이상),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교부금(교부세), 기금운용 수익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30% 이상) 등으로 조성(안 제3조)
- 기금의 관리 : 기금계좌를 구 금고에 별도로 관리(안 제5조)
- 심의회 설치 : 위원장(부구청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안 제6조)
- 심의회 기능 :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6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략)

5. 討 論 要 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 음)

7.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